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제 99 호

2018년5월25일(금)

여 수 시 보

시 정 방 침

- 1. 함께하는 소통시정
- 1. 활력있는 지역경제
- 1. 수준높은 교육복지
- 1. 앞서가는 해양관광
- 1. 걱정없는 안전사회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목 차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18-1296호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3
- 여수시 공고 제2018-1299호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4
- 여수시 공고 제2018-1302호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제3기 운영자 모집공고 /6
- 여수시 공고 제2018-1304호 「여수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3

회								
람								

여수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나진~소라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부체도로구간)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8. 2. 8.일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2018. 5. 25.

### 여수시장

1. 사업의 명칭 : 나진~소라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부체도로구간)
2. 사업의 위치 :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524-14번지 일원
3. 사업 시행자 : 전라남도지사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
4. 공고내용 : 재결서정본 송달(재결일 2018. 2. 8.)
5. 공고기간 : 2018. 5. 25. ~ 2018. 6. 8. (14일간, 초일불산입 15일간)
6. 재결서정본 수령장소 : 여수시청 도로과 【여수시 시청 동1길 23 】
7.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성명	송달주소	비고
1	박*련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118	
2	김*옥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275	
3	신*권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388-2	
4	정*선	여수시 화양면 창무리 193	
5	엄*순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868	
6	서*두	여수시 화양면 창무리 189	
7	윤*환	여수시 화양면 창무리 192	
8	서*수	여수시 화양면 창무리 148	
9	서*학	여수시 화양면 창무리 124	
10	정*주	여수시 울촌면 조화리 2	
11	정*주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1317	
12	정*주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1485	
13	이*수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1521	
14	최*영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683	
15	유*압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458	
16	김*옥	여수시 박람회길 61, 113-401	
17	김*옥	전라남도 여수시 광무북3길 17-7 (광무동)	
18	김*규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305-1	관계인
19	근로**공단	부산 사상구 폐병동 546-11 한빛빌딩 3층	관계인
20	천*구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275	관계인

##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 (태양광발전) 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5. 25.

### 여 수 시 장

#### □ 양수인가 내용

○ 태양광발전사업(여수 제17호)

구 분	양 도 인	양 수 인
발전소명	연도1호 태양광발전소	연도1호 태양광발전소
대 표 자	김근*	김승*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문화센터 38,***호 (반송동, 동탄솔빛마을 서해그랑블@)	여수시 남면 연도길 248-**
설치장소	여수시 남면 연도리 1327-3	
설비용량	99.84kW	
허가일자	2018년 5월 25일	
양수예정일	2018년 5월(양도.양수 계약 : '18. 4.)	

□ 양수인가 내용

○ 태양광발전사업(여수 제113호)

구 분	양 도 인	양 수 인
발전소명	복산2호 태양광발전소	복산2호 태양광발전소
대 표 자	최 수 *	서 미 *
소 재 지	여수시 시전4길 8-**(신기동)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 131번길 38-17, ***호(삼산동)
설치장소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595-19, 595-20번지	
설비용량	99kW	
허가일자	2018년 5월 25일	
양수예정일	2018년 5월(양도.양수 계약 : '18. 4.)	

#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제3기 운영자 모집 공고

여수밤바다의 빛과 맛을 통하여 낭만과 추억을 만들고 변화발전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제3기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5일

여 수 시 장

## 1. 낭만포차 운영자 모집개요

- 모집인원 : 18명(사회적 약자 3, 인근단체 2, 청년층 7 우선배정)
- 모집계층

구 분		모 집 인 원		비 고
		1차	2차	
계		36	18	
사회적 약 자	차상위 수급자 이하	2	1	우선배정
	장 애 인	2	1	"
	다 문 화	2	1	"
인 근 단 체	동 문 동	2	1	"
	중 앙 동	2	1	"
청 년 층		14	7	"
일 반 시 민		12	6	잠정인원

※ 사회적 약자 및 청년층은 우선배정 인원을 선정한 후 그 외 인원은 일반시민과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함.

- 신청대상 : 모집 공고일 현재 여수시 거주자(주민등록 등재)
- 모집계층별 자격 : 중복 신청 불가

- 사회적약자 : 차상위수급자 이하, 장애인, 다문화가족

※ 장애인은 여수시재가장애인총연합회에서 기존운영자 포함 2배수 이상 추천

- 청 년 층 : 만 19세~만 39세 이하

- 인근 단체 : 중앙동, 동문동 거주 개인 또는 단체
- ※ 인근단체는 해당동장이 기존운영자 포함 2배수 이상 추천

○ 신청 제외자

- 공고일 현재 업종에 관계없이 본인(배우자포함)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인자
- ※ 기존 운영자는 제외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증인자

## 2. 신청서 접수 및 방법

- 공고기간 : 2018. 5. 25. ~ 2018. 6. 1.(8일간)
- 접수기간 : 2018. 6. 1.(금) 09:00 ~ 18:00(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제출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여수시 여서1로 101(여서동) 도시재생과
  - 문의처 : 061)659-4552~4554

## 3. 낭만포차 운영 계획

- 개장일시 : 2018년 6월 26일
- 장 소 : 종포 해양공원 인근 도로변
- 운영시간 : 동하절기로 구분
  - 동절기 : 17:00 ~ 24:00 (4개월 : 11월 ~ 2월)
  - 하절기 : 19:00 ~ 02:00 (8개월 : 3월 ~ 10월)
- 운영기간 : 1년(3회 연장할 수 있음, 최대 4년 - 단, 1년마다 평가)
- 포장마차 제작기준
  - 제작형태 : 거북선 모형(이동식)
  - 규 격 : 최대 길이 3.5m, 폭 1.5m, 높이 2.0m 이내
  - 제작비용 : 자부담
  - 보관장소 : 거북선 대교 아래 공영주차장 이용(포차구역에서 1.1km)
  - 식자재 차량 : 랩핑

## 4. 운영자 선정일정

- 신청접수 : 2018. 6. 1.(1일간)

- 서류평가(1차) : 2018. 6. 4. ~ 6. 7.(4일간)
- 1차 평가 결과 공고 : 2018. 6. 8.(금)/ 홈페이지 공고
- 음식품평회(2차) : 2018. 6. 15. 전후(장소 미정)
- 최종선정 : 음식품평회 결과 우수자(현장에서 결정) ※ 차순위자는 대기자원 활용  
 ※ 상기 일정은 추진일정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5. 제출서류

- 낭만포차 운영자 참가 신청서 1부
- 낭만포차 운영 사업계획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최근 5년 주소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동의서(개인정보 등) 각 1부
- 사회적 약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작성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은 첨부파일 (붙임 1, 2, 3)을 확인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 6.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제출 시 평가에서 제외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일 경우 선정 취소
- 공개모집 신청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신청자는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관계 기준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포장마차 영업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허가신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운영으로 발생 되는 청소, 전기, 수도 등의 일체의 비용은 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때는 여수시 해석에 따름.

- 최종 선정된 운영자는 포장마차 운영 시 별첨 영업제한 및 의무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운영자는 카드결제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여수시 관광발전을 위하여 분기(4분기)마다 매출액의 3%를 공익 기부하여야 함.
- 평가 후 동점 시 세대인 수, 거주기간, 연령(최연소자) 우선순위로 결정함.
- 포장마차 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전매 또는 임차할 수 없음.
- 사회적 약자 및 청년층은 우선배정 인원을 선정한 후 그 외 인원은 일반시민과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함.
- 포장마차 운영자 결정을 받은 자가 포기 및 결격사유 발생 시 즉시 운영자 결정을 취소하고 운영 승계자(포기 및 결격사유 발생층)는 차순위자를 선정함.
- 포장마차 관리(보관 포함) 및 이동 시 파손,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임
- 상기 공고사항은 여수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붙임 1. 낭만포차 운영자 참가 신청서 등 서식 1부.  
 2. 낭만포차 운영자 영업제한 및 의무규정 1부.  
 3. 낭만포차 운영자 선정 배점표 1부. 끝.

-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  
**제3기 운영자 참가 신청서 등 서식**

2018. 5.





# 낭만포차 운영 사업 계획서

## 1. 메뉴(상호) · 조리방법 · 가격 등

### 1-1. 포차 상호명

○

※ 여수시 소재 섬 이름 상호를 포함한 명칭 사용(별첨 자료 참고), 상호의 의미 또는 뜻풀이 제시

※ 기존 사용중인 포차 상호명 중복 사용 불가

### 1-2. 메뉴 및 가격

○ 메뉴명 :

○ 메뉴가격 :

○ 메뉴설명 :

○ 메뉴사진 :

※ 주 메뉴 : 차별화된 메뉴 1~2가지로 2차평가(음식품평회) 대상이며, 메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기재하여야 함.

※ 부 메뉴 : (3~4개)선정하되 제시되지 않는 메뉴도 계절메뉴로 판매 가능

※ 판매가격 : 1인기준 8,000원 이내 권장

### 1-3. 조리방법, 식재료 수급방법

○

---

## 2. 위생 · 복장관리 계획

---

### 2-1. 식재료 · 조리기구 위생관리

○

※ 식재료 보관 및 조리기구 관리방법 등 자세하게 작성

### 2-2. 개인 위생 및 복장관리

○

※ 개인 위생 및 위생복장 등 : 반드시 착용할 복장(하절기, 동절기)

\* 상호 또는 주 메뉴에 부합 여부(사진, 그림제시 가능)

---

## 3. 관광홍보 계획

---

○

○

(자유롭게 서술하여 기재)

※ 이용관광객에게 여행지, 대표음식, 숙박지 등 관광여수 홍보 방안 등 작성

---

#### 4. 운영관리 계획

---

- 
- 

(자유롭게 서술하여 기재)

※ 낭만포차 내외부 환경개선 및 청결 유지, 종업원 교육, 민원 해소 방안 등 운영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 작성

---

#### 5. 친절 기타

---

- 
- 

(자유롭게 서술하여 기재)

※ 시민 및 관광객을 위한 방안(서비스, 이벤트 등), 기타 참고사항 등 작성

**※ 평가를 위한 자료이니 가급적 상세히 기재 요망**

▪ 부수는 제한 없음, 사진 등 자료 첨부 가능

**※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운영시 변경 불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여수시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제3기 운영자” 모집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을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제3기 운영자 모집관련 선정자료 관리

2.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사회적약자 확인사항, 기타사항 등

3.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 임금지급,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에 의하여 5년간 보관

4.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정이 지연되거나 상대적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18. . .

성명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동 의 서

---

- 여수밤바다 낭만포차에 대한 정책 및 환경변화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라도 폐지, 이전 등이 결정될 경우 수용하겠습니다.
- 1년 단위 심사 평가 결과(탈락)를 수용하겠습니다.
-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 하겠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함.

2018. . .

성명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 낭만포차 상호 권장(안)

### □ 여수지역 섬 이름(41개)

장군도, 대경도, 소경도, 오동도, 금오도, 동도, 거문도, 소거문도,  
하화도, 상화도, 화태도, 적금도, 낭도, 여자도, 두라도, 달천도,  
대운두도, 묘도, 장도, 둔병도, 낭도, 추도, 백야도, 제도, 개도, 월호도,  
대두라도, 사도, 초도, 자봉도, 안도, 연도, 대부도, 손죽도, 조발도,  
송도, 야도, 횡간도, 금죽도, 수양도, 백도,

### ※ 기존 낭만포차 운영자 사용 상호 명칭(참고)

금오도, 거문도 은갈치회, 안도 가영이네, 백야도, 신해양오동도,  
경도 127° , 백포차 백도, 해오름의 여신, 금오도 비렁길 포차,  
100° 백도포차, 낭만열차, 낭만포차 금오도, 낭만여우 낭도,  
거북선포차, 동백향이 어울러진 초도, 장군도 대장금포차, 하화도,  
화태도-돌산도 낭만포차 (18개)

-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  
**제2기 운영자 영업제한 및 의무규정**

2018. 5.



-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

# 제3기 운영자 영업제한 및 의무규정

---

## 1. 영업제한

- 의무휴업 : 상황발생 및 종료 시 까지
  - 천재지변, 태풍 등 악천후, 메르스 등 국가·지방관리 전염병 창궐 시
  
- 임시휴업 : 특정기간
  - 보건·위생 관리(식중독 발생 등)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 자체휴업 : 의무휴업과 임시휴업의 경우를 제외한 급작스런 기상특보 발령 시(강풍, 호우, 대설, 한파 등 악천후)에 대한 자의적 판단에 의한 휴무
  - 여수시(도시재생과장)와 운영위원회 위원장 동의를 득한 후 시행
  - 운영자 전체가 동의한 자체합의에 의한 휴무(가이드라인) 결정
  
- 영업시간
  - 동절기 : 17:00~24:00(4개월 : 11월 ~ 2월)
  - 하절기 : 19:00~02:00(8개월 : 3월 ~ 10월)

※ 자세한 운영 기준 등은 향후 제정되는 낭만포차 운영 규정에 따름

## 2. 세부 의무 규정

위반 내용	구체적 위반내용	위반 회수	행정처분
설 치 조 건 위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장마차 외부의 임의 변경 행위(허가·신고 시 형식)</li> <li>○ 포장마차의 무단 교체(허가·신고 시 형식)</li> <li>○ 지정된 장소 이외 지역에 포장마차를 설치하는 행위</li> </ul>	1회	시정명령
		2회	영업정지 10일 이하 및 강제정비
		3회	허가(신고)취소
운영에 관 한 위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신고자 외 타인이 영업을 한 때</li> <li>○ 포장마차 외부에 무단으로 광고물을 설치하는 행위(허가·신고 시 형식)</li> <li>○ 허가·신고증을 비치하지 않거나 허위조작 비치한 행위</li> <li>○ 사업계획서 미 이행 및 임의 변경</li> </ul>	1회	시정명령
		2회	영업정지 10일 이하 및 강제정비
		3회	허가(신고)취소
영업자 의 무 위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뉴 및 가격의 제한, 공동판매 특례규정을 임의로 위반 할 때</li> <li>○ 운영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쳐 보상이나 배상요구에 불응한 때</li> <li>○ 공익목적과 도시미관을 위해 허가(신고)권자가 운영자에게 제한 명령을 하였으나 불응한 때</li> <li>○ 영업허가구역 이외 지역내에서 화기사용 메뉴의 조리·판매 행위</li> <li>○ 공원지역 내에서 텐트 및 테이블 설치 행위</li> </ul>	1회	시정명령
		2회	영업정지 10일 이하 및 강제정비
		3회	허가(신고)취소
중대한 위 반 행 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신고)권자 승인 없이 포장마차 운영의 권리나 의무를 타인 에게 양도 임대 승계한 때</li> <li>○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신고(도로점용, 가설 건축물, 영업)를 받은 것이 확인될 때</li> <li>○ 포장마차 운영권을 자진포기한 때</li> <li>○ 페널티점수가 경력점수를 넘는 경우</li> </ul>	1회	허가(신고)취소
위 생 청 결 유 지 위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행위</li> <li>○ 부정 불량식품을 판매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적발된 경우</li> <li>○ 포장마차의 위생, 청결 위반자 및 불친절, 바가지 요금 그 밖의 사유로 시민 불편신고가 접수된 때</li> <li>○ 위생복 및 위생모 미착용 조리·판매 행위</li> </ul>	1회	시정명령
		2회	영업정지 10일 이하 및 강제정비
		3회	허가(신고)취소
그 밖 의 위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기관의 조사에 불응자</li> <li>○ 관련 공무원의 시정명령 및 지시 불이행</li> <li>○ 보건위생 등 관련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li> <li>○ 공공요금을 납부 하지 아니한 때</li> <li>○ 운영자 세부운영 규정을 위반한 때</li> </ul>	1회	시정명령
		2회	영업정지 10일 이하 및 강제정비
		3회	허가(신고)취소

※ 허가(신고)취소 : 도로점용허가, 가설건축물 신고 및 음식점 영업신고

※ 향후 낭만포차 운영규정 재정시에는 운영규정 준용함.

-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  
**제3기 운영자 선정 배점표**

2018. 5.



## 낭만포차 운영자 선정 배점표

평가 요소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점수
정량지표 (10점)	거주기간	여수시 거주기간(2018. 5. 25. 기준)	5
	가족 수	주민등록상 가족 수	5
정성지표 (90점)	메뉴	낭만포차 상호명 여수지역 정체성	10
		메뉴선정의 차별성·참신성	15
		판매가격의 적정성	10
		조리방법, 식재료 수급방법	15
	위생복장 관리	식재료 및 개인 위생관리	5
		복장관리	5
	관광홍보	관광객에게 여수시 홍보 방안 (여행지, 대표음식, 숙박지 등)	10
	운영관리	낭만포차 내·외부 환경개선 및 청결유지, 종업원 교육, 민원 해소 방안 등 운영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	10
친절기타	시민 및 관광객들을 위한 방안 (서비스, 이벤트 등), 기타 참고사항 등	10	
가·감점	기존운영자	경력점수(1년차 10점, 2년차 9점)	10~9
		임원점수(운영자협의체 회장, 부회장, 총무)	1
		페널티점수(1회 위반시)	-0.5
	신규참여자	가산점수	10

## 공 고

「여수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 입법 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5. 25.

## 여 수 시 장

「여수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발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 주민이 주도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 및 운영원칙을 수립

### 2. 주요내용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 마을공동체 전담부서 지정·운영
- 마을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간의 업무협조를 위해 행정지원협의회 설치

-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회 설치·운영**
  - 마을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마을자원을 발굴하여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
  -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 자문을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구성**
  - 마을공동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 ※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통합 운영 근거 명시

3. 입법 예고기간 : 2018. 5. 25. ~ 2018. 6. 14.(20일간)

4. 조례 제정안 : 별첨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8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일자리정책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 소 : 우)59715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오림동)  
진남경기장 주경기장 입구 여수시장(일자리정책관)
- 전 화 : 061-659-3598 / 팩 스 : 061-659-5819
- 이 메 일 : [kho2297@korea.kr](mailto:kho2297@korea.kr)

가) 주소 : 우)59715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오림동)  
진남경기장 주경기장 입구 여수시장(일자리정책관)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FAX), 직접방문, 이메일(e-mail)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 명 : 여수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 여수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의 형성과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시에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는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 전체가 협동하여 마을의 의사를 결정하고 추진하는 마을단위의 조직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마을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시키고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사업(이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주민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2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제4조(기본원칙)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마을의 특성과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정책방향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설치 등 민·관 협력체계 마련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추진방향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세부 및 주요 사업계획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 절차 등

**제7조(전담부서)**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부서에 관련 전문직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8조(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회 설치·운영)**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주민협의회 구성·운영)**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신청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자체계획 수립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수익사업의 추진방향 결정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수입과 지출관리

5. 그 밖에 문화행사 등 주민 공동행사 개최

② 주민협의회에는 협의회장과 그 밖에 필요한 사람을 두며, 협의회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선출한다.

③ 주민협의회는 정기회의와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는 주민협의회의 정관이나 회칙에 따라 운영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마을의 중기·장기 종합발전계획(이하 “마을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주민협의회의 명칭, 구성 및 역할 등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을 하는 사람에게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주민 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

3. 마을의 복지증진, 마을 공간조성 및 환경개선 사업

4. 마을의 문화예술 및 역사보존 등 특성화사업

5.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7. 자원발굴과 관련된 교육, 연구 및 조사

8. 그 밖에 시장이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미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일 사업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

**제11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이나 주민협의회(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계획서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신청서
3.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 모집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여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사업비의 환수)** ①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지급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4.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시장에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허위로 보고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연한 경우

②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야 한다.

**제13조(형성재산의 사용 승인)** 보조사업자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매·양도·교환·대여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장 여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제14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도록 여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 대상 및 범위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분석 및 평가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여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행정안전국장, 건설교통국장
2.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주민대표, 마을리더 및 마을활동가
4.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건축·조경·환경 등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전문가

④ 위원회의 기능을 제14조제2항에 따라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업무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제1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는 등 직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경우
4. 질병·장기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시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장 여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제21조(설치)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여수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여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여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조(기능)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행 지원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분석, 평가 및 연구
3.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 지원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관련 민간단체 간 연계망 구축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자문·연수·박람회·세미나·국내외 사례현장 견학 지원
6. 중앙부처 또는 전라남도 등에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사업의 유치 지원
7. 마을공동체 자원조사·관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수립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 받은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공무원 파견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거나 시설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하거나 보고 받은 사항을 확인하여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 서면으로 처분의 내용과 그 이유를 수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6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위탁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5장 보칙

제27조(분석·평가 의뢰)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향후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29조(포상)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육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주민, 마을,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0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